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974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975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고양시 조례 제2976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고양시 조례 제2977호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1
고양시 조례 제297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고양시 조례 제2979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고양시 조례 제2980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218호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27
고양시 규칙 제1219호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31
고양시 규칙 제1220호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40
고양시 규칙 제1221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3

훈 령

고양시 훈령 제441호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47
-----------------	-------------------------	----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5-419호	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73
고양시 고시 제2025-42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76
고양시 고시 제2025-423호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1호(지축역 환승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77
고양시 고시 제2025-424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제7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79
고양시 고시 제2025-425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16호]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86
고양시 고시 제2025-426호	도시계획시설[광로2-2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0
고양시 고시 제2025-427호	도시계획시설[중로1-37호선 외 2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4
고양시 고시 제2025-428호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6호(지축지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9
고양시 고시 제2025-430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4: 난지물재생센터]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01
고양시 고시 제2025-431호	도시계획시설(소로3-가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11
고양시 고시 제2025-432호	도시계획시설[소로3-651호선(F, O구역)] 외 2개소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18
고양시 고시 제2025-43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올림픽컨트리클럽)]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20
고양시 고시 제2025-434호	국가하천 하천점용허가 고시	125
고양시 고시 제2025-435호	도로명주소 고시	126
고양시 고시 제2025-437호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128

공 고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2025-772호	공인 신조 및 폐기 공고	132
고양시 공고 제2025-3068호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133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조례 제2974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월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소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행정지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이 경 희
	팀 장 성 명	행정지원팀장 장 주 민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배 성 윤 (031-8075-2173)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공무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생일휴가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함(제21조제12항).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조례 제2975호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란 중 “호국로 793”을 “고양대로 141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민자치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주민자치과장 주 은 주
	팀 장 성 명	자치행정팀장 이 충 섭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오 민 욱 (031-8075-2484)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성사1동행정복지센터가 주교우체국에서 창조혁신캠퍼스 성사내로 이전함에 따라 성사1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3”에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로 변경함(별표).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조례 제2976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으로 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횟수는 출산가구당 최대 4회로 한정하며,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기한이 지난 경우 남은 지원횟수는 자동 소멸한다.

③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당 자녀 1명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을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으로, “다음 각 호의”를 “매 신청 시마다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금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 및 제7조제2항후단의 개정규정은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장 은 옥
	팀 장 성 명	출산지원팀장 강 은 정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강 수 민 (031-8075-3328)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원 중단 이후에도 요건을 다시 충족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제2조).
- 나. 지원대상 요건 중 ‘최초 신청 시 직전년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를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로 변경함(제4조).
- 다. 신청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는 직전년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양시장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조례 제2977호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평생교육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평생교육과장 박 상 희
	팀 장 성 명	교육발전특구팀장 이 준 희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손 정 원 (031-8075-2275)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제적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고양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이 고양시 이자 지원사업 대상 범위보다 확대되어 조례 제정 이후 사업 시행 실적이 없는 실정이므로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조례 제2978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자동차에”를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본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장애인 등록증”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본문 중 “2세 환자”를 “2세환자가 탑승한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

착하고”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의 경우에는 최초 1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을 포함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탑승한 자동차.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주차요금의 감면)”을 “(주차요금의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장애인등록증”을 “장애인등록증”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발행”을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임산부 차량 표지를 제시한 자동차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탑승한 자동차.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발급”을 “발행”으로 “감면”을 “감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를 “경우에”로, “이용자에 한하여”를 “이용자에게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를 “고양시”로, “4인 이상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를 “4인 이상이 탑승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 자”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발급할”을 “발행할”으로, “발급대장”을 “발행대장”으로 한다.

3. 제6조제1호의 자동차 중 정기주차권을 신청한 경우(고양종합운동장의 주차장에 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발급한”을 “발행한”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를 “고양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의거”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찾고자 할”을 “인수할”로, “제2조”를 “제4조”로 한다.

제16조 중 “유료주차장내에서”를 “유료주차장 내에서”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필요 시”를 “필요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발급”을 각각 “발행”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주차교통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주차교통과장 유 진 상
	팀 장 성 명	주차정책팀장 김 기 호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박 선 민 (031-8075-2921)

[별표 1]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 2026년 주차요금

구 분		주 차 요 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 통	최초 60분(1구획)이내 무료 5분 초과 시마다 19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 상 시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 시마다 19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행 사 시	주차 1구획당 2,200원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 상 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 사 시	주차 1구획당 2,20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 상 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 사 시	주차 1구획당 2,200원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공 통	주차 1구획당 2,200원
그 밖의 부설주차장	공 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비고: ‘행사 시’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 2027년 주차요금

구 분		주 차 요 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 통	최초 60분(1구획)이내 무료. 5분 초과 시마다 21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상시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 시마다 21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400원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40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400원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공 통	주차 1구획당 2,400원
그 밖의 부설주차장	공 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비고: ‘행사 시’ 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 2028년 주차요금

구 분		주 차 요 금
시·구청 부설주차장	공 통	최초 60분(1구획)이내 무료. 5분 초과 시마다 23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 부설주차장	평상시	60분(1구획)에 기본요금 1,000원. 5분 초과 시마다 230원을 추가하고 정기주차요금은 33,000원으로 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600원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외주차장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600원
고양시 도시공원 (호수공원 등) 부설주차장	평상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노상주차장 3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행사 시	주차 1구획당 2,600원
행주산성 부설주차장	공 통	주차 1구획당 2,600원
그 밖의 부설주차장	공 통	교통정책상 필요시 시청부설주차장 기준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 비고: ‘행사 시’ 라 함은 시, 구청과 관리부서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말한다.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부설주차장의 설치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도록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주차요금의 면제 기준 정비 및 감경 대상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의 면제 기준을 정비하고, 감경 대상을 신설함(제6조 및 제7조).
- 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함(별표 1).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조례 제2979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시에서”를 “고양시에서”로 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시장이 공익 등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36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의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하수행정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하수행정과장 김 동 욱
	팀 장 성 명	하수도요금TF팀장 차 미 량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김 호 주 (031-8075-4589)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하수도 사용료 통합 납부 고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함(제35조제1항제7호 및 제17호).
- 나. 하수도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 규정을 정비함(제36조제3항).

제29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조례 제2980호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탄소중립”을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최성원·문재호 의원(찬성의원: 임홍열 의원 등 5명)

□ 제안이유

-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이 건물·수송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양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온실가스 대부분이 건물·수송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양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고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제12조제3항제2호).
-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규정함(제12조제3항제3호 신설).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규칙 제1218호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생태하천과]의 위임사무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2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하천의 유지·보수 (친수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 「하천법」 제27조
	2.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명령	· 같은 법 제29조
	3.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 같은 법 제74조
	4. 하천표지	· 같은 법 제83조
	5. 지방하천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권한	· 같은 법 제90조
	6. 하천부속물 및 하천시설대장의 관리	· 같은 법 제14조 및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3.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7. 하천관리원 임명	제15조 · 같은 법 제7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8. 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정한다)	· 같은 법 제98조
	1.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그 허가의 고시	· 「하천법」 제33조
	2. 하천의 사용금지·제한의 공고 및 표시	· 같은 법 제47조
	3.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0조
	4.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67조
	5.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3조
	6.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명령을 위반했을 때 다음 조치를 하는 권한 ·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 · 공사의 중지명령 ·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변경 명령 ·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 명령 · 효력이 상실된 허가의 원상회복	· 같은 법 제48조, 제69조
	7. 점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다음 권한 · 신축, 개축 공작물의 준공검사 · 하천 점용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 ·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30조, 제33조제6항, 제37조, 제9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8. 지방하천 점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 같은 법 제70조
	9.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경미한 보수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10. 지방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하천 점용료, 사용료의 강제징수	• 같은 법 제67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정책관
입안자	정책관 성명	기획정책관 안영선
	팀장 성명	조직제안팀장 송대호
	담당자 성명·전화	윤승희 (031-8075-2395)

고양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우리 시로 위임된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생태하천과 소관 지방하천에 관한 위임사무를 정비함(별표).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규칙 제1219호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를 “고양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시”를 “고양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작성·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서장”을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쟁송”을 “쟁송(爭訟)”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작성 및 비치한다”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고양시”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민사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민·형사상”을 “민사·형사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고양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따른 고양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소명 포함”을 “소명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양시 소송심의위원회”를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 등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확정일로부터”를 “확정일부터”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정본 1부, 등본 2부”를 “정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결확정증명서 2부”를 “판결확정증명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본 각 2부”를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임장 2부”를 “위임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본) 2부”를 “사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기하되”를 “제기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비용회수 업무”를 “소송비용 회수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12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실·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을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를 “「고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로, “종료 된”을 “종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서장”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장·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고문변호사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 의(開議)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등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중 “시”를 “고양시”로,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기여하는”을 “이바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송 사건”을 “소송사건”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

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제출 받은”을 “제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제1호마목 및 바목”으로 한다.

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징계의결 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3) 제1호라목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관련 서류,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적극행정 위원회 의견 자료 등

별지 제13호서식 중 앞 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법무담당관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법무담당관 박 천 재
	팀 장 성 명	송무지원팀장 이 후 영 규제개혁팀장 이 경 민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라 혜 영 (031-8075-2365) 김 미 화 (031-8075-2077)

[별지 제13호서식]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앞 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청구인 등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원고 , 피고 국가간의 법원 사건에 관하여 원고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 가집행선고부로) 되었으니 다음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

구분 당사자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 구 금 액		
	인용액	인용액	원 금	이 자	합 계
원고명					
계					

년 월 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판결문正本 1부 2. 판결확정증명서 1부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위임장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	---	------------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을 고양시가 지급하는 것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임의변제하는 것임에 불과함을 인정함.
※ 가집행선고부에 따른 임의변제의 경우 뒷면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조직개편 등에 따른 당연직 위원 수 변동을 고려하여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차후 불필요한 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 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 규정 및 회의록 등의 비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의 경우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제3호).
- 나.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함(제24조제1항 및 제3항).
- 다. 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을 규정함(제25조제4항).
- 라. 위원회 회의록 등의 비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25조제5항).
- 마.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징계절차 시 공무원의 방어권 보장

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별표 3).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규칙 제1220호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또는 제11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으로 본다.

1. 신축상가지역

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위치변경승인[다만, 면적변경(점포의 분할
· 합병을 포함한다)에 따른 위치변경인 경우는 제외한다] 후 위치
변경 전 기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는 지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
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
함한다)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소상공인지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장 고 명 님
	팀 장 성 명	특화산업팀장 김 오 란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박 승 원 (031-8075-3542)

고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공고 규정 등 개선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담배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특례가 2025년 10월 31일 효력이 만료되어 삭제함(제3조의2).
- 나. 담배소매인 관련 공고 규정에 대하여 명확히 정함(제7조제1항 및 제2항).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규칙 제1221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배수설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수량 신고: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적용구분(업종)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별지 제5호서
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 취하신청을 되돌려 줄”을 “공사 취소신청을 반려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하신청서”를 “취소신청서”로, “이내”를 “이내에”로, “취하”를 “취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감면 :”을 각각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20감면 :”을 “20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감면 :”을 “감면:”으로, “경우”를 “ 경우(감면하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후 정상 사용량 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내 신청하여야하며”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로, “해당월”을 “해당 월”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불받고자 하는”을 “환불을 받으려는”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한다”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하수행정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하수행정과장 김 동 욱
	팀 장 성 명	하수도요금TF팀장 차 미 량
	담 당 자 성명·연락처	김 호 주 (031-8075-4589)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공공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상하수도 사용료 통합 납부 고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정비함(제14조제1항제7호).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훈령 제441호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양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부서”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복무 및 징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 및 사용승인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예산부서”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등의 예산 편성을 총괄 관리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
5. “차별적 처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 및 동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하며,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실업대책 또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등의 공정 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근로자의 사용

제4조(사용원칙) ① 근로자의 사용은 법 제4조에 따른다.

②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복무관리·감독 권한은 사용부서의 장에 있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채용, 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인력운영계획 및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채용 계획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와 연도 중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채용 계획서를 접수했을 때에는 사용목적, 인원, 기간, 업무특성, 예산 등 채용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용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부서에 관련 예산 편성을 의뢰하고, 예산부서는 예산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차별시정 절차의 마련) ① 사용부서의 장은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이하 “고충처리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속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업무
2. 고충처리 절차 마련 및 운영
3.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차별시정 및 고충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고충처리담당자의 지정 여부와 이용방법을 소속 근로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참정권 등 권리행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참정권 행사, 공적으로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10조(성실의무) 근로자는 고양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중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 관련과 관계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은 직무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직장이탈 금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제14조(품위유지) 근로자는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시의 명예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금지사항) 근로자는 공익 및 시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다른 직무의 종사 금지) 근로자는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피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4장 근로시간 및 복무

제18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주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9조(연장근로)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제2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부서의 장은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또는 휴일에 근로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 및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또는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당 시간 및 휴일에 근로할 수 있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분명하게 밝혀 사용부서의 장에게 청구하는 경우

제21조(복무)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출근, 퇴근 등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② 근로자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결근 사유 및 결근 예정 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가 구두 또는 유선으로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22조(휴일)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 동안의 정해진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② 노동절(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유급휴일과 제2항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본다.

제23조(연차 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용부서의 장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병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30일의 범위에서 무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되어 출석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6.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26조(경조사 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유급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해야 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7조(휴가 등의 승인) 연차, 공가, 병가, 특별휴가, 출장 등(이하 이 조에서 “휴가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가 등 사용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28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

로로 전환해야 한다.

제29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0조(근로시간 단축)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육아기 자녀의 양육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

제31조(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32조(육아시간) 사용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33조(생리휴가)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

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4조(난임치료휴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

제35조(가족돌봄휴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

제7장 임금 및 사회보험

제36조(임금)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국도비 사업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에 대한 임금형태, 임금 구성항목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별도로 정한다.

③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제해야 한다.

1.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2.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

제37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기록한 별도의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매월 특정일에 지급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

③ 임금산정기간 중도에 채용, 퇴직했을 때에는 출근일수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한다.

제38조(결근 등의 임금공제)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결근 일수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을 공제할 수 있으며, 지각·조퇴 및 사용외출에 대해서는 시간 단위로 공제할 수 있다.

제39조(사회보험)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

제8장 퇴직 및 해고

제40조(퇴직)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사망한 경우
 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3.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상실·면허취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퇴직을 하려는 경우 퇴직일 30일 전까지 사용부서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남은 기간에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에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징계, 손해배상 등 불이익처분을 할 수 있다.

제41조(해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직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제42조(해고예고)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

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적어 통지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 30일 전까지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까지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3조(포상) ① 고양시장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근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징계: 해고·정직

2. 징계제: 감봉·견책

제45조(징계사유)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재해 또는 시에 중대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2.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밖에 업무추진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4. 지각, 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5. 직무수행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6. 형사사건으로 입건되거나 직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경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채용된 경우
8.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유로 징계의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제46조(징계의 효력) ① 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47조(징계의 처리)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사용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고양시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48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8.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비밀 누설 금지
 9.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 ④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근로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

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와 다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51조(안전 및 보건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보건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사용부서의 장의 지시를 지켜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52조(안전보건 교육)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

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유해위험작업 시의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53조(작업안전용품)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제54조(재해보상)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했을 때의 보상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제55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에 대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부서의 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56조(업무 외의 재해)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 칙

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인적자원과
입 안 자	부 서 장 성 명	인적자원과장 박 영 산
	팀 장 성 명	공무직운영팀장 오 승 하
	담 당 자 성명 · 연락처	이 재 경 (031-8075-2411)

[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1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별지 제1호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 소											
재직 (경력) 사항	소 속											
	직 명	기간제근로자	담당업무									
	재직기간	.부터 .까지(년 개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table><tr><td rowspan="3">인사 기록 확인</td><td>확인자</td><td></td></tr><tr><td>부 서</td><td></td></tr><tr><td>연락처</td><td></td></tr></table>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사 기록 확인	확인자		부 서		연락처	
인사 기록 확인	확인자											
	부 서											
	연락처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부 (월)

(부서명: 직명: 기간제근로자 성명:)

00월	1	2	3	4	5	6	7	8	9	1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단가 (일급)	출근 일수	휴당 수일수	유급 휴일수	연차 수당일수	금 액		계좌번호 (은행)		성 명		수령인

유급연차 현황	
총발생일수	
연차사용일수	
수당지급일수	
미사용 잔여일수	

상기와 같이 확인함

0000. 00. 00.

담당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휴가 등 신청서

신 청 내 역			
소 속		직 종	기간제근로자
연 락 처		성 명	
구 분	☐ 연차 ☐ 공가 ☐ 병가 ☐ 특별휴가 ☐ 출장 ☐ 기타		
일 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일(시)간]		
사 유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부서장 귀하			

고양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채용 사전심사제 및 병가, 특별휴가 등 관련 조문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인력체계 마련 및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간제근로자 사용원칙 및 채용 사전심사제를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나. 병가 사용기준 및 증명 방법을 규정함(제24조).
- 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제29조 및 제35조).
- 라. 징계종류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제44조 및 제47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고양시 고시 제2025-419호

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4-511(2024.12.27.)호로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73-18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준공예정일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373-1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 외 1개소) 사업
- 명칭 : 도시계획시설(대로3-1호선 외 1개소) 조성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조창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 10*동 130*호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668m²

명 칭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기 능	시 점	종 점	비고
결 정	대로	3	1	25	857	보조간선	대로2-1	중로1-1	
금회시행	대로	3	1	8	63	보조간선	대로2-1	중로1-1	
결정	중로	2	2	15	695	집산도로	대로3-1	중로1-3	
금회시행	중로	2	2	8.5	30	집산도로	대로3-1	중로1-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가. 대로3-1호선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합 계				3.824	262					
1	일산서구 덕이동	373-18	잡	3,824	262	교보자 산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나. 중로2-2호선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공부면 적	편입면 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합 계				11,380	406					
1	일산서구 덕이동	373-18	잡	3,824	234	교보자 산신탁 (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2	”	303-22	임	4,829	2	아시아 신탁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코스모타워 6층			
3	”	373-16	대	2,727	170	조창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 10*동 130*호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20(충정로 1가)(일산덕이지 점)	근저당권

고양시 고시 제2025-422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양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검토하는 지역에 대하여 향후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양시 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번호	위 치	면 적(㎡)	비 고
1	덕양구 대자동 134-26번지 일원	4,407	
2	덕양구 대자동 139-8번지 일원	200	
3	덕양구 대자동 334-1번지 일원	8,065	
4	일산동구 백석동 459번지 일원	9,630	
5	덕양구 내곡동 485-15번지 일원	439	
계		22,741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상지의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이 변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다.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5-1-1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다만, 제한기간 이내라도 대상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가 완료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한 종료)

마. 제한행위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지 분할

바. 제한행위 제외 대상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재축, 용도변경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재해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행위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전까지 허가를 받은 행위 및 고시일 전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서 종래에는 행위허가가 가능한 행위

사.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열람장소 및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열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031-8075-3067)

고양시 고시 제2025-423호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1호(지축역 환승주차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4-458(2024. 12. 3.)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99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1호(지축역 환승주차장)]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999번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1호(지축역 환승주차장)]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정	1	노외주차장	지축동 999	2,105.0	
금회시행	1	노외주차장	지축동 999	2,105.0	연면적 5,169㎡(지상3층, 4단)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용현동)
- 성명: 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북부지역본부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999	주차장	2,105	2,105	고양시	고양시				

고양시 고시 제2025-424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제7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4-317(2024. 8. 27.)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13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제7호) 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201-132번지, 506-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제7호 송전선로 이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결정	7	전기공급설비	원당동 239-2번지 일원				21,623	산고제42호 04-04-14	고양시고시 2023-56호: 21,623㎡
금회 시행	7	전기공급설비 (신덕은~원흥T/L)	원당동 201-132	원당동 240-7	원당동 208-13	609	9,233		▶ 철탑 2기 이설 ▶ 송전선로 1,224m 이설
		전기공급설비 (양주~일산T/L)	원당동 506-9	원당동 321-11	원당동 314-30	615	9,207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성명: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 신덕은-원 흥T/L

[철답부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명	
1	덕양구 원당동	208-19	전	62	62	국유지	국토 교통부	구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철탑(지상권 또는 소유권)
2	덕양구 원당동	208-18	전	2	2	국유지	국토 교통부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철탑(지상권 또는 소유권)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명	
1	덕양구 원당동	201-128	체	40	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주)한양 컨트리클럽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25.9~49.9m)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국민은행	
2	덕양구 원당동	201-129	체	4	4	공유지	고양시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구분지상권 상공 (25.9~49.9m)
3	덕양구 원당동	1087-4	임	11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5.9~49.9m)
4	덕양구 원당동	1063-26	천	263	263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3.0~48.9m)
5	덕양구 원당동	212-25	답	1,055	1,05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02, 400호	지0복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0.8~49.9m)
6	덕양구 원당동	212-28	답	66	66	공유지	고양시				구분지상권 상공 (22.3~46.6m)
7	덕양구 원당동	212-27	답	132	132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로 05, 300동 1002호	지0향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0.8~45.1m)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02번길 0-4	지0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 500동 001호	지0음				
8	덕양구 원당동	212-31	답	157	157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11길 40-10, 나동200호	이0안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0.6~45.0m)
9	덕양구 원당동	212-26	답	68	6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802, 400호	지0복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0.6~45.0m)
10	덕양구 원당동	212-30	답	174	17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70, 100동 002호	김0돈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0.5~44.8m)
11	덕양구 원당동	212-23	전	663	66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7 정발마을 004-004	박0삼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19.6~44.7m)
12	덕양구 원당동	211-5	전	827	8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60(원흥동)	곽0숙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0.5~47.3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8, 102동 200호	곽0신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0096, 001동 1002호	곽0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유산길 10번길 07, 002동 002호	곽0신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명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 106, 001동 004호	곽0숙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능곡로 30-01, 005동 2004호	곽0실				
13	덕양구 원당동	209-8	전	545	5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50	이0영				구분자양원 상공 (24.0~51.9m)
14	덕양구 원당동	209-11	전	225	22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050, 106동 800호	이0송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24.0~51.9m)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050, 106동 800호	이0동				
15	덕양구 원당동	209-10	전	109	109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구분자양원 상공 (29.7~52.8m)
16	덕양구 원당동	209-13	전	528	528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구분자양원 상공 (30.8~57.2m)
17	덕양구 원당동	208-15	전	435	43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구분자양원 상공 (36.4~61.2m)
18	덕양구 원당동	208-13	전	141	141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구분자양원 상공 (41.4~62.6m)
19	덕양구 원당동	208-11	전	584	584	국유지	국토교통부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구분자양원 상공 (36.6~62.6m)
20	덕양구 원당동	208-17	답	77	77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35.6~57.4m)
21	덕양구 원당동	249-22	답	12	12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35.6~57.4m)
22	덕양구 원당동	249-21	도	117	117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33.9~57.4m)
23	덕양구 원당동	249-28	전	54	54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33.9~55.6m)
24	덕양구 원당동	249-25	답	139	139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33.9~55.6m)
25	덕양구 원당동	249-23	대	347	347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27.8~55.6m)
26	덕양구 원당동	249-19	답	322	322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27.8~55.6m)
27	덕양구 원당동	249-27	전	815	81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14.0~50.8m)
28	덕양구 원당동	249-24	답	62	62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14.0~50.8m)
29	덕양구 원당동	249-29	답	35	3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14.0~37.4m)
30	덕양구 원당동	217-9	대	26	26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14.0~37.4m)
31	덕양구 원당동	221-17	잡	776	776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14.0~47.0m)
32	덕양구 원당동	239-5	답	13	13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23.7~46.7m)
33	덕양구 원당동	240-5	답	15	1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23.7~46.7m)
34	덕양구 원당동	240-6	답	57	57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24.1~47.9m)
35	덕양구 원당동	221-18	잡	75	7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24.1~47.9m)
36	덕양구 원당동	241-12	답	9	9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양원 상공 (24.1~47.9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이 외의 권 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명	
37	덕양구 원당동	240-7	답	41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4.1~47.9m)
38	덕양구 원당동	241-15	답	45	4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4.1~47.9m)
39	덕양구 원당동	241-16	답	1	1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4.1~47.9m)
40	덕양구 원당동	201-132	체	68	68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	(주)한양 컨트리클럽				구분자상권 상공 (24.1~47.9m)
41	덕양구 원당동	201-133	체	22	22	공유지	고양시	구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한국전력공사	구분자상권 상공 (24.1~47.9m)
42	덕양구 원당동	1087-5	임	14	14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4.1~47.9m)

- 양주-일산T/L
[철탑부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명	
1	덕양구 원당동	341-31	임	68	6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컨텍스로 055, 102동 4606호	박0자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철탑(지상권 또는 소유권)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64번길 0, 002동 602호	박0소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명	
1	덕양구 원당동	506-5	임	1,088	1,08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09, 1006호	충장공권울 도원수종회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15.7~47.9m)
2	덕양구 원당동	1056-19	도	41	41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3.8~47.5m)
3	덕양구 원당동	1056-11	도	9	9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5.2~48.5m)
4	덕양구 원당동	1056-18	도	7	7	공유지	고양시				구분자상권 상공 (25.2~48.5m)
5	덕양구 원당동	1056-21	도	11	11	공유지	고양시				구분자상권 상공 (25.2~48.5m)
6	덕양구 원당동	481-2	전	196	196	경기도 파주시 평화로 205-10	이0규	근저당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3번길 36	원당농업 협동조합	구분자상권 상공 (23.7~47.5m)
7	덕양구 원당동	486-7	답	830	83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07-20	밀양박씨 밀성파종친회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3.5~48.0m)
8	덕양구 원당동	482-4	답	171	17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364번길 00-70	권0창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3.5~47.2m)
9	덕양구 원당동	486-8	답	25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4.7~48.0m)
10	덕양구 원당동	486-2	답	1	1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4.7~48.0m)
11	덕양구 원당동	487-5	답	61	6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07-20	밀양박씨 밀성파종친회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상권 상공 (24.7~48.4m)
12	덕양구 원당동	487-10	답	11	11	공유지	고양시				구분자상권 상공 (24.7~48.4m)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이 외의 권 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관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명	
13	덕양구 원당동	487-8	답	3	3	공유지	고양시				구분자영원 상공 (24.7~48.4m)
14	덕양구 원당동	487-6	답	25	2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4.7~48.5m)
15	덕양구 원당동	487-7	답	45	4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4.7~48.5m)
16	덕양구 원당동	1056-16	도	11	11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5.2~48.5m)
17	덕양구 원당동	1057-3	구	10	10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5.2~48.5m)
18	덕양구 원당동	1057-9	구	8	8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5.2~48.5m)
19	덕양구 원당동	1057-6	구	37	37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5.2~48.5m)
20	덕양구 원당동	1057-5	구	7	7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5.2~48.5m)
21	덕양구 원당동	1057-7	구	27	27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5.2~48.5m)
22	덕양구 원당동	468-12	임	6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001, 033동 004호	이0종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7.8~50.4m)
23	덕양구 원당동	491-3	임	43	43	공유지	고양시				구분자영원 상공 (24.7~47.8m)
24	덕양구 원당동	491-6	임	2	2	공유지	고양시				구분자영원 상공 (24.7~47.8m)
25	덕양구 원당동	491-4	임	2	2	공유지	고양시				구분자영원 상공 (24.7~47.8m)
26	덕양구 원당동	468-8	임	515	515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4.4~52.4m)
27	덕양구 원당동	468-9	임	221	221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4.4~52.4m)
28	덕양구 원당동	468-15	임	16	16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4.4~52.4m)
29	덕양구 원당동	산30-15	도	265	26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001, 033동 004호	이0종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4.6~48.6m)
30	덕양구 원당동	산30-19	임	299	299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2.7~48.6m)
31	덕양구 원당동	산30-17	임	389	389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3.1~44.0m)
32	덕양구 원당동	468-11	임	250	2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001, 033동 004호	이0종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1.7~51.2m)
33	덕양구 원당동	341-30	임	1,047	1,04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055, 102동 46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 64번길 0, 002동 602호	박0자 박0소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32.2~58.9m)
34	덕양구 원당동	341-24	전	340	340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019번길 20	장0열				구분자영원 상공 (27.1~58.9m)
35	덕양구 원당동	341-28	임	1,006	1,006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18.8~54.7m)
36	덕양구 원당동	341-25	전	26	26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27.1~51.9m)
37	덕양구 원당동	341-26	전	148	148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18.0~41.4m)
38	덕양구 원당동	321-10	임	953	953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자영원 상공 (18.0~41.7m)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관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명	
39	덕양구 원당동	321-8	임	818	818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019번길 2	장0교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17.8~45.9m)
40	덕양구 원당동	321-11	임	76	76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019번길 2	장0교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2.6~45.3m)
41	덕양구 원당동	506-9	임	73	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59,1006호	충장공관울 도원수종회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2.9~45.7m)
42	덕양구 원당동	506-11	임	3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59,1006호	충장공관울 도원수종회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5.2~47.9m)
43	덕양구 원당동	506-12	임	12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59,1006호	충장공관울 도원수종회	구분 지상권	국유지	국토교통부	구분지상권 상공 (25.2~47.9m)
44	덕양구 원당동	505-5	대	2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304번길 00-43	유0숙				구분지상권 상공 (24.1~47.9m)
45	덕양구 원당동	505-6	도	3	3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003	이0규				구분지상권 상공 (24.1~47.9m)

고양시 고시 제2025-425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16호]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2-137(2022. 5. 2.)호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5-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16호]에 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125-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 명 칭 : 154kV 수색-은평T/L 건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결정	16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덕양구 향동동 산143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덕양구 지축동 산125-1	0.588	9,266 (송전탑:689, 선하지:8,577)	고양시고시 제2021-166호 (2021.05.11.)	
금회 시행	16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덕양구 향동동 산143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덕양구 지축동 산125-1	0.588	9,266 (송전탑:689, 선하지:8,577)	-	-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결정내용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결정	16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덕양구 향동동 산143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덕양구 지축동 산125-1	길이	588m	고양시고시 제2021-166호 (2021.05.11.)	구분지상권설정 토지에 한함 (입체적 공중면적만 포함)
						폭	12~29m		
금회 시행	16	전기공급설비 (송전선로)	덕양구 향동동 산143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덕양구 지축동 산125-1	길이	588m	-	-
						폭	12~29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 송전탑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 명	
1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5-1	임야	142,834	68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07, 1008동 004호 (판교동, 판교원마을)	김O수	구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0, 301동 002호 (서현동, 한양아파트)	장O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0, 100동 006호 (청담동, 삼환아파트)	장O규				

- 선하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 소	성 명	권리 종류	권 리 자		
									주 소	성 명	
1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37-1	답	1,233	13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 삼환아파트 100-006	장O규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근저당권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동부이촌동지점)	주식회사 우리은행	
2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39-2	임야	26,310	139	전북 김제군 백산면 석교리 211	파평윤씨 영양군파 종중				
3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239-6	구거	1,173	278		국 (농림축산 식품부)				
4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4-9	임야	617	76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 공사				
5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4-10	임야	1,290	128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 (빛가람동)	한국전력 공사				
7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25-1	임야	142,834	6,46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로 107, 1008동 004호 (판교동, 판교원마을)	김O수	구분 지상권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으로 55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10, 301동 002호 (서현동, 한양아파트)	장O석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0, 100동 006호 (청담동, 삼환아파트)	장O규				

8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산143	임야	21,789	63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1-18 대우멤버스카운티O차 004호 미합중국 00601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니트 2012 이스트 워터사이드드라이브 O20	박O준 데이비드O	지상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	-------------------	------	----	--------	-----	---	------------------	-----	-------------------------	--------	--

고양시 고시 제2025-426호

도시계획시설[광로2-2호선 외 1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4-160(2024. 4. 30.)호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69-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광로2-2호선 외 1개소]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269-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광로2-2호선 외 1개소]사업
- 명칭: 도시계획시설[광로2-2호선 외 1개소]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광로	2	2	50	주간선 도로	140	덕은동고양시계 덕은동579-14	대로2-13 덕은동269-14	일반 도로		경고제5006호 00-04-17	
금회 시행	광로	2	2	50	주간선 도로	140	덕은동고양시계 덕은동579-14	대로2-13 덕은동269-14	일반 도로			
결정	대로	2	13	30~ 35	주간선 도로	6,528	덕은동83-31	향동동5-2	일반 도로		경고제381호 98-09-15	
금회 시행	대로	2	13	30~ 35	주간선 도로	515	덕은동 579-12	덕은동 569-1	일반 도로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성명: 서울특별시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없음)
 - 용지조서(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266-17	전	400	400	공	서울특별시				
2	266-20	전	193	13	공	서울특별시				
3	266-4	전	132	48	공	서울특별시				
4	266-14	전	268	268	공	서울특별시				
5	269-10	잡	279	16	공	서울특별시				
6	269-6	잡	3	3	공	서울특별시				
7	269-27	잡	4	1	공	서울특별시				
8	269-39	잡	2	2	공	서울특별시				
9	269-34	전	60	60	공	서울특별시				
10	269-40	전	84	81	공	서울특별시				
11	269-36	전	69	39	공	서울특별시				
12	269-44	도	126	83	공	경기도				
13	269-46	도	185	46	공	경기도				
14	269-45	도	133	13	공	경기도				
15	269-23	도	36	36	공	경기도				
16	269-26	전	394	360	공	서울특별시				
17	269-33	전	170	170	공	서울특별시				
18	269-21	도	406	162	공	경기도				
19	269-24	도	131	131	공	경기도				
20	269-29	도	356	356	공	경기도				
21	269-25	도	17	5	공	경기도				
22	269-13	도	494	107	공	경기도				
23	267-6	전	1,233	1,233	공	서울특별시				
24	267-13	전	130	130	공	서울특별시				
25	237-8	전	44	44	공	서울특별시				
26	237-7	전	349	349	공	서울특별시				

일련 번호	지 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27	237-6	전	60	60	공	서울특별시				
28	569-1	천	735	735	공	서울특별시				
29	579-11	천	17,713	222	국	환경부				
30	579-12	천	58,525	1,780	국	국토교통부				
31	579-13	천	1,964	1,964	국	환경부				
32	266-21	구	174	171	공	서울특별시				
33	269-8	전	20	20	공	서울특별시				
34	269-7	전	327	327	공	서울특별시				
35	266-16	구	73	13	공	서울특별시				
36	269-4	전	1,476	1,476	공	서울특별시				
37	269-12	전	1,409	1,409	공	서울특별시				
38	266-11	전	790	645	공	서울특별시				
39	266-22	구	960	777	공	서울특별시				
40	579-14	천	4,253	1,571	국	국토교통부				
41	269-14	전	1,535	1,535	공	서울특별시				
42	569-5	천	166	144	공	서울특별시				
43	267-7	전	281	281	공	서울특별시				
44	267-1	천	16	16	공	서울특별시				
45	569-4	천	236	236	공	서울특별시				
	합계		96,411	17,538						

고양시 고시 제 2025-427호

도시계획시설[중로1-37호선 외 2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5-308(2025. 10. 31.)호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1-6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37호선 외 2개소]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51-6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중로1-37호선 외 2개소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규 모				연장 (m)	면적 (㎡)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1	37	20-33	1,775		변경없음
금회시행	중로	1	37	20-33		1,320	
결정	소로	3	45	6	45		변경없음
금회시행	소로	3	45	6		305	
결정	소로	3	166	6	45		변경없음
금회시행	소로	3	166	6		2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고양 능곡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정세창)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69-4 유익빌딩 3층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가. 중로1-3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면적(m ²)	면적(m ²)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282-37	도	17	17	-	고양시				
2	〃	282-41	도	36	36						
3	〃	282-40	도	7	7						
4	〃	252-30	도	23	23	-	경기도				
5	〃	254-9	도	101	101						
6	〃	254-10	도	33	33						
7	〃	252-26	도	2	2						
8	〃	252-28	도	57	57						
9	〃	252-29	도	53	53						
10	〃	252-20	도	1	1						
11	〃	251-131	도	51	51	-	국(국토 교통부)				
12	〃	251-132	도	4	4						
13	〃	251-126	대	15	15	-	대지권 설정			집합 건물 14인	
14	〃	251-59	도	25	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3**번길 1*-1*, *동 2**호	노*옥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	지도단위 농업협동 조합	근저당 설정	
15	〃	251-128	도	18	18	-	고양시				
16	〃	251-129	도	6	6						
17	〃	251-130	도	55	55						
18	〃	248-26	도	74	74	-	국(국토 교통부)				
19	〃	248-27	도	457	457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20	ㄱ	248-14	도	50	50	2**-9	윤*선				
21	ㄱ	248-22	도	15	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3*	청*약품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	
22	ㄱ	248-23	도	2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3*	청*약품 주식회사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주식회사 신한은행	근저당 설정	
23	ㄱ	248-25	도	14	14	-	경기도				
24	ㄱ	248-15	도	30	3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6	정*례				
25	ㄱ	251-99	도	4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6	김*복				
26	ㄱ	255-14	도	27	2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2*	이*신	서울 종로구 청진동 235-1	주식회사 동진주택	채무권자	
27	ㄱ	282-38	도	65	65	-	경기도				
28	ㄱ	282-39	도	77	77						
29	ㄱ	251-133	도	1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2*	최*천				
합계		-	-	1,320	1,320						

나. 소로3-16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252-9	전	26	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	이*신				
합계		-	-	26	26						

다. 소로3-4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지목	면적(m ²)	면적(m ²)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토당동	254-6	도	32	32	-	경기도				
2	〃	252-24	도	8	8	-	경기도				
3	〃	252-7	답	99	9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	이*신				
4	〃	252-18	전	160	1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	이*신				
5	〃	252-31	대	5	5	-	대지권 설정			집합 건물 14인	
6	〃	252-19	전	1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	이*신				
합계		-	-	305	305						

고양시 고시 제2025-428호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6호(지축지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5-262호(2025. 9. 5.)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160-3번지의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6호(지축
지구)]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
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160-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명칭: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6호(지축지구)]사업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결정	6	노외주차장	지축동 1160-3	868.4	
시행	6	노외주차장	지축동 1160-3	868.4	연면적 1386.13㎡(지상2층,옥탑1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 주소: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40길91, 2층(대명동)
- 성명: 베스트 스타월드 주식회사(대표자 : 노동남)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라,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160 -3	주차장	868.4	868.4	베스트스 타월드주 식회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40길 91,2층(대명 동)				

고양시 고시 제2025-430호

도시계획시설[하수도 4: 난지물재생센터]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5-190(2025. 6. 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하수도 4: 난지물재생센터)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시설) 사업
- 명 칭 :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충인시설 등) 설치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결정	4	하수종말 처리장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920,636	관보 제1984-9929호 (1984.12.28.)	-
금회시행	4	하수종말 처리장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920,636	-	반류수조 덮개설치 반류수반응조 탈취기설치 (39,042㎡)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합 계		920,636	920,636	
하수처리 시설	건축면적	23,447	23,447	변경없음
	건축외면적	360,478	360,478	변경없음
	소 계	383,925	383,925	변경없음
체육시설	축구장 등	17,532	17,532	변경없음
도로	관리용도로	48,015	48,015	변경없음
	내부도로	13,303.43	13,303.43	변경없음
	소 계	61,318.43	61,318.43	변경없음
녹지 및 여유부지	조경녹지	202,228	202,228	변경없음
	여유부지	255,633	255,633	변경없음
	소 계	457,861	457,861	변경없음

- 건축계획 (변경없음)

세부내역			건축물대장 등재(㎡)				비 고
			기 정		변 경		
번 호	건물명칭	층 수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면적	
합 계			39,480.49	23,447.15			
1	가스발전기실	1/1	2,184.00	1,260.00			
2	감시동	0/1	36.00	36.00			
3	관리본관	1/2	4,562.50	1,908.30			
4	농축기계동	0/1	112.20	112.20			
5	드럼스크린실	0/1	124.62	124.62			
6	보일러동	1/1	1,166.80	592.80			
7	사여과지상옥	0/1	122.10	122.10			
8	소포수펌프동(1)	0/1	19.76	19.76			
9	소포수펌프동(2)	0/1	19.76	19.76			
10	소포수펌프동(3)	0/1	19.76	19.76			
11	송풍기동	0/1	144.00	144.00			
12	송풍기동(1)	1/2	2,325.75	1,095.60			
13	송풍기동(2)	1/1	1,429.60	736.00			

14	슬러지처리동	1/3	1,981.94	1,324.05			
15	종침계단실A	0/1	24.00	29.25			
16	종침계단실B	0/1	24.00	29.25			
17	종침계단실C	0/1	24.00	29.25			
18	종침계단실D	0/1	24.00	29.25			
19	종침전기실A	0/1	89.11	89.11			
20	종침전기실B(1)	0/1	70.70	73.18			
21	종침전기실B(2)	0/1	70.70	73.18			
22	초침계단실A(1)	0/1	21.75	27.00			
23	초침계단실A(2)	0/1	21.75	27.00			
24	초침계단실B(1)	0/1	21.75	27.00			
25	초침계단실B(2)	0/1	21.75	27.00			
26	초침계단실C	0/1	21.75	27.00			
27	초침계단실D(1)	0/1	20.85	26.10			
28	초침계단실D(2)	0/1	20.85	26.10			
29	초침계단실D(3)	0/1	20.85	26.10			
30	초침계단실E(1)	0/1	18.80	22.80			
31	초침계단실E(2)	0/1	18.80	22.80			
32	초침계단실E(3)	0/1	18.80	22.80			
33	초침전기실A	0/1	113.30	113.30			
34	초침전기실B(1)	0/1	45.90	45.90			
35	초침전기실B(2)	0/1	45.90	45.90			
36	탈수기동	1/2	1,880.00	702.00			
37	탈지휠동	0/2	400.00	212.36			
38	토양탈취휠실(1)	0/1	72.00	72.00			
39	토양탈취휠실(2)	0/1	72.00	72.00			
40	투입동	0/2	2,240.96	1,779.38			
41	포기조계단실(1)	0/1	16.14	16.14			
42	포기조계단실(2)	0/1	16.14	16.14			
43	포기조계단실(3)	0/1	16.14	16.14			
44	오물탈수기동	1/3	4,842.50	1,844.90			
45	급수동	1/2	1,487.90	509.60			

46	수전실	0/2	660.50	653.70			
47	수위실	0/1	63.00	63.00			
48	농축조기계실	0/1	112.20	112.20			
49	오수펌프장	1/1	126.10	21.40			
50	초침수전실(1)	0/1	54.00	54.00			
51	초침수전실(2)	0/1	54.00	54.00			
52	초침수전실(3)	0/1	54.00	54.00			
53	기계반입실 및계단실(1)	0/1	20.70	20.70			
54	기계반입실 및계단실(2)	0/1	20.70	20.70			
55	기계반입실 및계단실(3)	0/1	20.70	20.70			
56	초침계단실F(1)	0/1	16.90	16.90			
57	초침계단실F(2)	0/1	16.90	16.90			
58	초침계단실F(3)	0/1	16.90	16.90			
59	초침계단실F(4)	0/1	16.90	16.90			
60	초침계단실F(5)	0/1	16.90	16.90			
61	초침계단실F(6)	0/1	16.90	16.90			
62	(음식물처리장)	0/2	1,624.23	1,543.20			
63	2계열전기실	0/1	59.74	59.74			
64	방류펌프장	0/1	987.00	987.00			
65	슬러지보관창고	0/1	900.00	900.00			
66	2농축기동	1/2	1,158.00	739.16			
67	중침계단실E(1)	0/1	15.52	15.52			
68	중침계단실E(2)	0/1	15.52	15.52			
69	중침계단실E(3)	0/1	15.52	15.52			
70	포기조중침계단실F(1)	0/1	17.10	17.10			
71	포기조중침계단실F(2)	0/1	17.10	17.10			
72	포기조중침계단실F(3)	0/1	17.10	17.10			
73	포기조중침계단실F(4)	0/1	17.10	17.10			
74	포기조중침계단실F(5)	0/1	17.10	17.10			
75	포기조중침계단실F(6)	0/1	17.10	17.10			
76	포기조중침계단실F(7)	0/1	17.10	17.10			
77	포기조중침계단실F(8)	0/1	17.10	17.10			

78	포기조중침계단실F(9)	0/1	17.10	17.10			
79	1계열전기실	0/1	72.42	75.89			
80	3계열전기실	0/1	72.42	75.89			
81	녹조류펌프실	0/1	97.50	101.40			
82	차량대기실동	0/1	1,132.70	1,132.70			
83	1농축기동	1/1	602.56	384.06			
84	용수공급동	0/1	90.20	90.20			
85	오수펌프동	0/1	92.59	92.59			
86	농축기동(1처리장)	0/2	1,101.73	580.43			
87	농축기동(2처리장)	1/3	1,228.88	584.00			
88	탈황설비(1처리장)	0/2	236.54	131.89			
89	탈황설비(2처리장)	0/2	198.58	110.85			
90	TMS실	0/1	80.52	80.52			
91	충인처리동	2/2	2,205.24	806.4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정: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계				920,636	920,636						
1	강매동	300-7	잡	30,959	30,959	서울시	공				
2	덕은동	523-16	잡	8,145	8,145	서울시	공				
3	덕은동	523-17	잡	73	73	개성시 동흥동 47*	박○오				
4	덕은동	523-19	잡	97	97	개성시 동흥동 47*	박○오				
5	덕은동	523-20	잡	1,044	1,044	개성시 동흥동 47*	박○오				
6	덕은동	523-21	잡	26	26	서울시	공				
7	덕은동	523-23	잡	5,669	5,669	서울시	공				
8	덕은동	523-24	잡	231	231	고양군 신도면 덕은리 40*	임○남				
9	덕은동	523-27	잡	11	11	개성시 동흥동 47*	박○오				
10	덕은동	523-34	잡	356	356	서울시	공				
11	덕은동	523-35	잡	537	537	서울시	공				
12	덕은동	523-36	잡	290	290	서울시	공				
13	덕은동	523-37	잡	7	7	서울시	공				
14	덕은동	523-38	잡	13	13	개성시 동흥동 47*	박○오				
15	덕은동	523-39	잡	19	19	개성시 동흥동 47*	박○오				
16	덕은동	523-43	잡	3,097	3,097	서울시	공				
17	덕은동	523-44	잡	3,828	3,828	서울시	공				
18	덕은동	523-45	잡	9	9	개성시 동흥동 47*	박○오				
19	덕은동	523-46	잡	363	363	개성시 동흥동 47*	박○오				
20	덕은동	523-47	잡	1,175	1,175	개성시 동흥동 47*	박○오				
21	덕은동	523-48	잡	143	143	서울시	공				
22	덕은동	523-49	잡	36	36	서울시	공				
23	덕은동	525-0	잡	63,632	63,632	서울시	공				
24	덕은동	525-1	잡	706	706	서울시	공				
25	덕은동	525-2	잡	9,523	9,523	서울시	공				
26	덕은동	525-3	잡	23,856	23,856	서울시	공				
27	덕은동	531-4	잡	57	57	서울시	공				

28	덕은동	537-19	잡	215	215	서울시	공				
29	덕은동	546-1	잡	28	28	서울시	공				
30	덕은동	555-2	잡	2,742	2,742	서울시	공				
31	덕은동	555-5	잡	72	72	서울시	공				
32	덕은동	555-6	잡	280	280	서울시	공				
33	덕은동	557-13	잡	240	240	서울시	공				
34	덕은동	557-59	잡	106	106	서울시	공				
35	덕은동	557-85	잡	2,535	2,535	서울시	공				
36	덕은동	557-92	잡	340	340	서울시	공				
37	덕은동	557-93	잡	41	41	서울시	공				
38	덕은동	575-14	잡	16	16	서울시	공				
39	덕은동	575-15	잡	40	40	서울시	공				
40	현천동	593-7	잡	17	17	서울시	공				
41	현천동	593-8	잡	17	17	서울시	공				
42	현천동	593-9	잡	19	19	국토교통부	국				
43	현천동	593-10	잡	173	173	국토교통부	국				
44	현천동	593-11	잡	2	2	국토교통부	국				
45	현천동	614-4	잡	1,170	1,170	서울시	공				
46	현천동	634-5	잡	1780	1780	서울시	공				공동 소유지
				280	280	고양군 신도읍 화전리 56*	권○석				
47	현천동	653-2	잡	225	225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30*-4*	노○석				
48	현천동	673-2	잡	364,087	364,087	서울시	공				
49	현천동	673-3	잡	187,034	187,034	서울시	공				
50	현천동	673-4	잡	19	19	서울시	공				
51	현천동	673-5	잡	692	692	서울시	공				
52	현천동	673-6	잡	110	110	서울시	공				
53	현천동	673-7	잡	4	4	서울시	공				
54	현천동	673-8	잡	1,176	1,176	서울시	공				
55	현천동	673-9	잡	849	849	서울시	공				
56	현천동	673-10	잡	7,810	7,810	서울시	공				
57	현천동	673-11	잡	372	372	서울시	공				
58	현천동	673-12	잡	161	161	서울시	공				

59	현천동	673-13	잡	434	434	서울시	공				
60	현천동	673-14	잡	1,168	1,168	서울시	공				
61	현천동	673-15	잡	8	8	서울시	공				
62	현천동	673-16	잡	1,316	1,316	서울시	공				
63	현천동	673-17	잡	20	20	서울시	공				
64	현천동	673-18	잡	15	15	서울시	공				
65	현천동	673-19	잡	40	40	서울시	공				
66	현천동	673-20	잡	69	69	서울시	공				
67	현천동	673-21	잡	143	143	서울시	공				
68	현천동	673-22	잡	351	351	서울시	공				
69	현천동	673-23	잡	126	126	서울시	공				
70	현천동	689-15	잡	185	185	서울시	공				
71	현천동	692-2	잡	12,907	12,907	서울시	공				
72	현천동	692-12	잡	267	267	서울시	공				
73	현천동	692-13	잡	454	454	서울시	공				공동 소유지
				58	58	대전시 중구 갈마동3*브력 2호	이○호				
74	현천동	692-15	잡	62	62	경기도	공				
75	현천동	692-24	잡	89	89	서울시	공				
76	현천동	692-25	잡	34,119	34,119	서울시	공				
77	현천동	692-26	잡	289	289	서울시	공				
78	현천동	692-31	잡	124	124	서울시	공				공동 소유지
				16	16	국토교통부	국				
79	현천동	692-36	잡	101	101	서울시	공				
80	현천동	692-37	잡	789	789	국토교통부	국				
81	현천동	692-38	잡	210	210	서울시	공				공동 소유지
				27	27	국토교통부	국				
82	현천동	694-2	잡	1,168	1,168	서울시	공				
83	현천동	697-4	잡	60	60	경기도	공				
84	현천동	708-3	잡	878	878	서울시	공				
85	현천동	708-5	잡	16,809	16,809	서울시	공				
86	현천동	709-0	잡	1,993	1,993	서울시	공				
87	현천동	716-0	잡	1,802	1,802	서울시	공				

88	현천동	729-7	전	39	39	국가정보원	국				
89	현천동	729-9	잡	1,593	1,593	서울시	공				
90	현천동	763-7	잡	8,049	8,049	서울시	공				
91	현천동	763-8	잡	27,643	27,643	서울시	공				
92	현천동	764-0	잡	2,473	2,473	서울시	공				
93	현천동	765-0	잡	2,689	2,689	서울시	공				
94	현천동	766-0	잡	220	220	서울시	공				
95	현천동	771-7	잡	7,560	7,560	서울시	공				
96	현천동	771-8	잡	67,719	67,719	서울시	공				

고양시 고시 제2025-431호

도시계획시설(소로3-가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66-212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가호선), 공공공지 54호] 사업에 대하여 시행기간 변경, 분할측량 결과 반영 및 공공공지54호 제척 등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66-212번지 외 1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

- 종류 : (당 초)도시계획시설(도로, 공공공지) 사업
- 종류 : (변 경)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당 초)도시계획시설(소로3-가호선, 공공공지 54) 사업
- 명칭 : (변 경)도시계획시설(소로3-가호선)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가	6-8	국지 도로	40	소로 1-149	삼송동 57-101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5-293호	-
금회시 행	소로	3	가	6-8	국지 도로	40	소로 1-149	삼송동 57-101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2015-293호	-

-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54	공공공지	삼송동 산3-11일원	137	고양시고시 제2015-293호	-
금회 시행	54	공공공지	삼송동 산3-13일원	-	-	제척

※도시계획시설(대로1-11호선 등, 통일로확포장 공사)사업과 중복되어 공공공지54호를 제척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 성명 : (당 초)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
- 성명 : (변 경)한국토지주택공사장
- 주소 : (당 초)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 (지축동)
- 주소 : (변 경)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당 초)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 (변 경)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반·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

사.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라, 바” 항과 같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구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14	필지	3,474	415					
변경			13	필지	305	305					갑110
기정	1	덕양구 지축동	766-212	임	36	3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기정	2	"	766-239	임	106	1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지적분 할
변경		"	766-239	임	11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제척
변경		"	766-264	임	4	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기정	-	"	산206-6	도	264	12	국토교통부	국			등록전 환 지적분 할
변경		"	766-255	도	17	-	국토교통부	국			제척
기정	3	"	산207-2	도	13	10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등록전 환 지적분 할
변경		"	766-256	도	20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제척
변경		"	766-267	도	1	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기정	4	"	산207-4	임	19	1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등록전 환 지적분 할
변경		"	766-262	임	25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제척
변경		"	766-266	임	9	9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기정	5	"	산207-3	임	88	88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등록전 환
변경		"	766-261	임	114	114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구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기정	6	"	산207-1	임	91	22	이*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25*(평창동)	국민건강 보험공단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등록전 환 지적분 할 84 x 3/9
							조*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길 1*, 10*동 1**3호(이촌동, 엘지***이아파트)			84 x 2/9
							조*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 1**동 10**호(반포동, ***퍼스티지)			84 x 2/9
							조에**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25*(평창동)			84 x 2/9
변경		"	766-265	임	20	20	이*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25*(평창동)			84 x 3/9
							조*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길 1*, 10*동 1**3호(이촌동, 엘지***이아파트)			84 x 2/9
							조*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 1**동 10**호(반포동, ***퍼스티지)			84 x 2/9
							조에**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길 25*(평창동)			84 x 2/9
기정	7	"	766-222	임	5	5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기정	8	"	766-176	임	1,638	8	이*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1*번길 1*, 10*동 1**3호(안양동, 을목**아파트)	고양 축산업 협동조합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4 (성사동) (고양동지점)	지적분 할 148 x 819 /24000
							이*희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 50*번길 1*, 10*동 1**4호 (철산동, 철산리****아파트)			148 x 2184 /24000
							이*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4*번길 13-*, *01호 (안양동)			148 x 1365 /24000
							이*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길 1*, 10*동 *02호 (상도동, 브라운스톤상도)			148 x 1092 /24000
							김*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 2**동 *01호 (백현동, 백현마을)			148 x 6540 /24000
							윤*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 *동 *09호 (개포동, 경남아파트)			148 x 577 /1638
							윤*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 *동 *07호 (개포동, 개**신아파트)			148 x 121 /1638
							윤*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 10*동 *08호 (문정동, 을***밀리타운아파트)			148 x 121 /1638
변경		"	766-263	임	8	8	이*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11*번길 1*, 10*동 1**3호(안양동, 을목**아파트)			148 x 819 /24000
							이*희	경기도 광명시 안양천로 50*번길 1*, 10*동 1**4호 (철산동, 철산리****아파트)			148 x 2184 /24000
							이*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 4*번길 13-*, *01호 (안양동)			148 x 1365 /24000

구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이*애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3*길 1*, 10*동 *02호 (상도동, 브라운스톤상도)			148 x 1092 /24000
							김*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 2**동 *01호 (백현동, 백현마을)			148 x 6540 /24000
							윤*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1*, *동 *09호 (개포동, 경남아파트)			148 x 577 /1638
							윤*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 *동 *07호 (개포동, 개**신아파트)			148 x 121 /1638
							윤*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 10*동 *08호 (문정동, 올***밀리타운아파트)			148 x 121 /1638
기정	9	덕양구 삼송동	57-112	임	2	2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지적분 할
변경		"	57-112	임	1	-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제 척
변경		"	57-119	임	1	1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기정	10	"	57-101	임	56	56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기정	11	"	산3-13	도	547	97	국토교통부	국			등록전 환 지적분 할
변경		"	57-113	도	90	-	국토교통부	국			제 척
변경		"	57-120	도	6	6	국토교통부	국			
기정	12	"	산3-11	도	33	33	국토교통부	국			
기정	13	"	57-67	임	576	12	주*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2*번길 3*-1* (지축동)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일산문 춘지점)	지적분 할

구분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권 리 자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변경		"	57-118	임	12	12	주*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2*번길 3*-1* (지축동)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일산문 춘지점)	

고양시 고시 제2025-432호

도시계획시설[소로3-651호선(F, O구역)] 외 2개소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4-248호(2024. 7. 5.)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042-11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소로 3-651호선(F, O구역)] 외 2개소 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을 위한 준공예정일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 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1042-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도시계획시설[소로3-651호선(F, O구역)]외 2개소 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사업시행자 : 풍동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나)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 1로 29-37, 406호

다) 조 합 장 : 김 재 관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㉞구역 (소로3-651,소로3-652호선 도로개설공사, 대로3-41호선 일부구간 포함)
 - 소로3-651호선:L214.0m , 교량1개소신설:L=80.0m, B=5.5m~6.75m
 - 소로3-652호선:L213.0m , 교량1개소신설:L=87.0m, B=5.5m~6.75m
 - 도로연장연결로 L=381.0m, 교량2개소신설 L=116.0m, B=9.5m~15.0m
/ L=25.0m, B=9.0m
 - 대로3-41호선 구간 우수암거 이설(1.5x1.5); L=128.5m
- ㉟구역
 - 대로2-1호선: 소로3-651,소로3-652호선 연결구간 변속차로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으로 게재생략”

사. 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2 지형도면 및 관계도면은 “게재생략” 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 고시 제2025-433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올림픽컨트리클럽)]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4-351호(2024. 9. 20.)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7-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올림픽컨트리클럽)]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7-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
 - 명 칭 : 올림픽컨트리클럽 골프장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4	체육시설	골프장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7-1번지 일원	373,921	경고제75호 (88.03.21.)	-
금회 시행	4	체육시설	골프장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7-1번지 일원	373,92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수 량	부지면적(㎡)	구성비 (%)	비 고
			변경		
체육 시설 용지	티 그 라 운 드	26개소	194		
	그 린	9개소	10,755		
	웨 어 웨 이	-	71,368		
	라 프	-	72,544		
	병 커	32개소	2,619		
	연 습 그 린	1개소	355		
	소 계	9홀	157,835	42.21%	
건축 시설 용지	클 럽 하 우 스	1동	657.54		
	직 원 숙 소	1동	244.64		
	휴게소(1홀)	1동	75.69		
	휴게소(5홀)	1동	90.00		
	복 합 동	1동	349.16		
	기 타	8동	75.80		
	연 수 동	1동	9,971.29		
	소 계	14동	11,464.12	3.06%	
기반 시설 용지	주 차 장	138대	2,873.00		
	도 로	-	11,135.47		
	카 트 도 로	-	7,243.79		
	벨 트 웨 이	-	123.36		
	리 프 트		244.00		
	저 류 지		1,117.00		
	소 계	-	22,736.62	6.08%	
녹지 용지	조 경 녹 지	-	69,159.52	18.50%	
	원 형 보 전 지	-	112,725.74	30.15%	
	소 계	-	181,885.26	48.65%	
총 계		-	373,921.00	100.00%	

- 건축계획 (변경없음)

시설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층수	동수	비고
클럽하우스	657.54	1,423.74	지하1층~ 지상3층	1동	
직원숙소	244.64	244.64	지상1층	1동	
휴게소(1홀)	75.69	75.69	지상1층	1동	
휴게소(5홀)	90.00	180.00	지상1층~ 지상2층	1동	
복합동	349.16	1,002.58	지상1층~ 지상3층	1동	
기타	75.80	75.80	지상1층	8동	
연수동	9,971.29	29,090.05	지하2층~ 지상4층	1동	
합계	11,464.12	32,092.50			

구분		층별	주요시설	면적(㎡)	비고
기타	그늘막(7홀)	지층	-	31.20	
	그늘막 및 경비실	지층	그늘막(6동), 경비실	44.60	-
		소계	그늘막(7동), 경비실	75.80	총8동

구분	층별	주요시설		면적(㎡)	비고
복합동	1층	사무소	사무소	41.78	
			카트고	292.86	
	2층	휴게식당		334.64	
	3층	창고		333.30	
	소계	1,002.58		1,002.5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시행자 : (주)올림픽컨트리클럽
- 대표자 : 이관식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 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및 지형도면은 게재생략하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변경없음)

연번	구분	지번 (벽제동)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	변경 없음	467-1	채	321,803	319,034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2	변경 없음	467-2	채	27,804	27,804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3	변경 없음	467-3	채	3,266	3,266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4	변경 없음	467-4	채	14,489	14,489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5	변경 없음	463-2	채	1,686	1,524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6	변경 없음	466	채	2,172	557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7	변경 없음	468	채	6,007	5,19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8	변경 없음	479	채	518	518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9	변경 없음	482	채	1,001	1,00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10	변경 없음	466-1	채	109	109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11	변경 없음	703-10	채	307	27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12	변경 없음	703-11	채	670	153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465	(주)올림픽 컨트리클럽				
합 계				379,832	379,921						

[고양시 고시 제2025 - 434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1. 하천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피허가자 : 권부재 등 58명

3. 점용목적 및 개요

- 구산동(46명) : 벼농사를 위한 하천점용
- 장항동(9명) : 벼농사를 위한 하천점용
- 행주외동(3명) : 기타(주차장)이용을 위한 하천점용

4. 점용지역 위치 및 면적

-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672번지 : 650,291 m²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6번지 : 200,496 m²
-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500번지, 458-21번지 : 2,530 m²

※ 세부사항 열람은 고양시청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 직접 방문

5. 점용허가 유효기간 : 2026.1.1. ~ 2026. 12. 31.(365일간)

6. 담당부서/담당자 : 고양시청 생태하천과 한강관리팀/이병문(031-8075-2754)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75-2754)에 문의 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고시 제2025 - 43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양로 222-1 등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5. 12.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37 외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양로 222-1	2025-12-30	2016-06-07	화정동 ~ 신사동간 도로명부여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640-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현로 289-8	2025-12-30	2009-09-11	옛군청이 위치한 곳으로 관아를 지칭하는 말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112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이산포길 342-20	2025-12-30	2009-09-11	이산포IC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1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8길 9	2025-12-30	2019-11-01	고유지명 및 유래 등을 고려하여 선정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17 외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총장로350번길 138-12	2025-12-30	2010-01-26	총장로 시점에서 3500m에 위치한 도로	
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90-7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70번길 145	2025-12-30	2010-01-26	호수로 시점에서 700m에 위치한 도로	
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75-3 외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62-27	2025-12-30	2009-09-11	군부대 인근의 도로로 화랑의 높은 기개를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350-1 외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162-5	2025-12-30	2009-09-11	군부대 인근의 도로로 화랑의 높은 기개를 도로명에 적용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73-33 외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277-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건달산로 277-2	2025-12-30	민원 신청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43-13	2025-12-30	건물 멸실	고양동		

고양시 고시 제2025-437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 양 시 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 칭	소재지	관리주체			
도내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99-25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덕양구
은뿔이교 (강매방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13-3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덕양구
은뿔이교 (원흥방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899-1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덕양구
도래울교 (권율대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524-1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덕양구
삼원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12-1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덕양구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 칭	소재지	관리주체			
원흥보도육 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1009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덕양구
상곡4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22-2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덕양구
고양관광 문화단지 보행육교 TYPE-B 바이우다 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56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산동구
고양관광 문화단지 보행육교 TYPE-C 아름다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1775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산동구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 칭	소재지	관리주체			
신평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936-51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산동구
사리현3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112-2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산동구
바위재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956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산동구
군자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114-1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도로관리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별표1의2)에 해당되는 시설물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신규 지정·고시된 제3종 시설물은 지정 된 다음연도부터 시설물관리계획 제출 및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정기안전점검 제출대상입니다. ※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산동구

공 고

고양시 공인 조례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조 및 폐기한 공인을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인의 명칭 및 인영

구분	공인의 명칭	인영
신조	고양시일산서구 주엽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고양시일산서구청장인 민원사무전용 주엽1동전용	
폐기	고양시일산서구 주엽1동장인 민원사무전용	
	고양시일산서구청장인 민원사무전용 주엽1동전용	

2. 공인의 등록 및 폐기 사유

-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교체에 따른 공인 등록 및 이전 발급기에 등록된 공인 폐기

3. 최초사용 연월일 : 2026. 1. 13. (화)

4. 공고자 :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2025. 12. 30.

고 양 시 일 산 서 구 청 장



고양시 공고 제2025-3068호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우리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5번지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 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0.

고 양 시 장

1. 공람 및 의견서 제출 기간 : 2025. 12. 30. ~ 2026. 1. 13. (14일간)

2. 공람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031-8075-3440)
-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2, 동해빌딩 307호] (☎031-976-4533)

3. 공람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서류

4.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위 치 : 일산서구 일산동 587-5번지

라. 면 적 : 3,547㎡

마.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바. 조합의 명칭 :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72, 동해빌딩 307호

아. 조합설립인가 변경 내용

1) 조합 정관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u>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u>(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u>소규모주택정비사업</u>의 명칭은 <u>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u>(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조(명칭) ①본 조합의 명칭은 <u>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u>(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본 조합이 시행하는 <u>가로주택정비사업</u>의 명칭은 <u>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u>(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조합 명칭 변경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5번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u>3,547.00㎡</u>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구역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87-5번지로서 토지의 총면적은 <u>3,547.00㎡</u>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편입 또는 제척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과 토지의 총면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오기 수정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u>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u>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 시행규칙(별지 12호 서식)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u>로 한다.</u>	조합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③ 1세대로 구성된 세대원이 각각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 2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③ <u>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u>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⑤ <u>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u>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있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청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2.03.05. 신설) ⑥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u>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u> 시행 목적에 맞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22.03.05. 신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⑤ <u>가로주택정비사업의</u>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있는 사업시행(예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청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2.03.05. 신설) ⑥ 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u>가로주택정비사업</u> 시행 목적에 맞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022.03.05. 신설)	조합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의 변경) ①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 또는 조합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삭제>, 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타 오기 수정
제40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u>소규모 재건축사업</u>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26조에 의한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제40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u>가로주택 정비사업</u>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26조에 의한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조합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제62조(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2조(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조합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제66조(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별지목록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u>세인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u>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66조(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별지목록 기재함과 같다. 위와 같이 <u>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u>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조합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

5. 의견제출 방법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방문 · 이메일 · 우편 · 팩스 접수
 - 우편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20(백석별관 6층)
 - 이메일 : song5216@korea.kr
 - 문의전화 및 팩스 : ☎031-8075-3440 (Fax : 031-8075-4936)
6. 기타사항 : 본 공람내용은 최종 결정내용이 아니며,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의견서

고양시 공고 제2025 - 3068호(2025. 12. 30.)

(세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 공고)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제출일자 : 2026. . .
- 제출의견